

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추락, 익수 등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**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**의 규정에 의거 **출입통제장소**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소 재 지

- 가.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 신항
- 나. 울산광역시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

2. 범 위

- 가. 중앙방파제 및 범월갑방파제 전체
- 나. 대왕암공원 갯바위 전체

※ 대왕교, 산책로 등 공원 내 통상적인 출입 가능지역은 제외

3. 지 정 일

- 가. 2016. 8. 20.(토)
- 나. 2017. 3. 20.(월)

4. 통제기간 : 연 중

5. 참고사항

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**법 제25조 제2항**의 규정에 의하여 **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**을 받게 됩니다.

울 산 해 양 경 찰 서 장